

국세 미수령환급금 안내문

귀하께서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이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.

< 환급금 지급신청 방법 >

- ▶ 인터넷(PC, 모바일) : 홈(손)택스 접속 → 납부·고지·환급 → 국세환급 → 환급계좌 개설(변경) 신고
- ▶ 우편 : 「국세환급금 계좌이체입금요구서 및 계좌개설신고서」를 작성하여 세무서로 송부
- ▶ 전화 : 미수령환급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본인 계좌를 신고
- ▶ 방문 :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세무서에서 재발급 받아 우체국 방문

* 사망자 환급금에 대한 지급자 변경 등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국세환급금은 최초 지급 결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 국고로 귀속됩니다.

년 월 일

○○세무서장 (관인생략)

※ 문의전화 : 환급금 결정내용, 환급계좌 신고 관련 (☎)
환급금 수령방법, 지급일 관련 (☎)

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 및 계좌개설신고서

환급금 권리자 (납세자)	상 호(성명)		주민(사업자)등록번호	
	주 소 (사 업 장)	()		
환 급 내 용	환 급 금		세 목	
	지 급 요 구 일		지급요구번호	
예 금 계 좌	금 용 기 관 명	은행(우체국)		
	계 좌 번 호			

위의 국세환급금을 기록한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라며, 추후 환급금 발생시 이 계좌로 이체
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인)

세무서장 귀하

첨 부 : 통장사본 1부. 신분증사본 1부.

※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- 수집·이용 목적 (국세환급금 결정 및 지급)
 - 수집 대상 개인정보 (성명, 전화번호, 계좌번호, 주소)
 - 보유·이용 기간 (영구)
 -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(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입금 불능)이 있을 수 있음
-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[] 동의하지 않음 []